

대구예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(제정 2011.01.27. 대학평의회)

(개정 2011.09.16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3.01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0.03.09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4.03.25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학칙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전문가, 학부모 또는 동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개정2011.9.16)

1. 교직원

가. 부처장 3인(2024.3.25.)

나. 직원대표 1인

2. 학생 : 3인(총학생회장, 총대의원회의장, 총동아리연합회장)

3. 관련전문가: 총장 추천 1인(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)

4.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 : 총동창회장 추천 1인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
③ 학생 자치단체의 미구성으로 학생 대표 3인을 구성할 수 없을 시 구성된 학생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이로 구성한다.(2024.3.25.)

제3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6조 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(개정 2020.03.09.)

② 위원회는 사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둔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3.25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